# 제642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록

2025. 11. 28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 Ⅰ. 회의개요

○ 일　　시 : ‘25. 11. 28. (금) 13:30 ~ 16:30

○ 출석위원(7명)

- 오 균 위원장

- 민간위원 : 박선규, 이민창, 이인호

- 정부위원 : 국조실, 행안부, 산업부

## Ⅱ. 상정안건

| 구분 | 의안번호 | 상정기관 | 의 안 명 | 구 분 |
|---|---|---|---|---|
| ① | 2025-2965 |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심의안건 |

## Ⅲ. 회의 결과

### 1.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개 요

| 소관 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규제 사무명 | ① 본인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범위<br>- (정보전송자) ▲연간 매출액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또는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재학생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br>- (전송정보) 모든 산업 분야 & 홈페이지에서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조회 가능한 정보<br>· (제외대상)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된 정보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br><br>② 전문기관 등을 통한 본인전송요구 대리<br>- 정보전송자는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대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을 거절해서는 안됨<br>- 대리인인 전문기관 등은 수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함<br>- 전문기관의 업무에 정보주체 본인이 전송받은 본인전송정보를 위임받아 관리·분석하는 업무 추가<br><br>③ 개인정보 전송 방법<br>-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 이용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한 방식'으로 전송<br>※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정보주체를 대리하여 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한 자동화된 도구'로 전송 가능 |
| 위원회 결정 내용 | 동 규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의료·통신 분야가 금년 부터 시행인 점 등을 고려 추가 논의* 필요<br>* ▲다양한 이해관계자(소비자단체 등 정보주체, 개별 기업 등)의 의견 청취, ▲의료·통신 분야의 실적 및 성과 분석, ▲본인전송 확대시 소요되는 비용 분석, ▲해외사례 등 자료 보완 후 규제심사 재**개** |

## □ 논의 내용

### (1)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이해관계자 1) 데이터 주권 강화와 정보 주체 권리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존중함.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법 체계, 보안 산업 경쟁력, 국제 정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다섯가지 이유에서 반대함

- 첫 번째, 위임 입법의 한계와 법적 정합성의 문제가 있음. 법률은 본인정보 전송과 제3자정보 전송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형식상 본인 정보 전송이지만 실질적으로 제3자정보 전송과 다를 바 없음

- 두 번째, 전송되는 구매 내역과 이용 정보가 단순한 일반 정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때 단순 거래 기록이 아닌 가격 정책, 재고 전략, 마케팅 등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음.

  이런 정보가 전송 요구권을 통해서 외부 전문기관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해외 경쟁 기업자에게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 국내 영업 비밀 유출 우려가 있음

- 세 번째, 전문 기관이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전문 기관이 여러 정보 전송자로부터 전송받는 대량의 데이터를 중앙 집합형 형태로 보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음. 이는 해킹뿐만 아니라 외부 유출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네 번째, 각 개별 업체는 본인 전송 인프라 구축하데 걸리는 기간이 약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또한 해외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용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이 큼

- 다섯 번째, 국제적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 EU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도 데이터 전송권을 금융과 의료, 일부 특정 분야로 제한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1) 따라서, 실질적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봄

- 첫 번째, 무엇보다도 정보 전송 대상 산업과 범위는 금융, 의료 등 기존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필요

- 두 번째, 사생활 침해와 영업 비밀 유출이 위험에 있는 높은 분야는 적용 예외를 명확하게 할 필요

- 세 번째, 전문기관의 역할은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지원에 한정하고 자체 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을 제외시킬 필요

- 네 번째, 전송 방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메일 파일 제공 등 각각의 사업자들이 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다섯 번째, 제도 시행 후 실증 기반의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재논의를 거쳐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

○ (이해관계자 2) 대기업들도 정보 보안 비용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은 2023년 3개, 2025년 상반기에 4개 사업자가 라이선스를 반납하였고, 3년간 누적 손실액이 3,241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 필요

- 유럽 GDRP에서도 다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대리인이라는 조항을 만들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과 맞지 않게 추진하고 있음

- 스크래핑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긁어오는 게 아니라 정보주체가 패스워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대리인들이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보관·사용하여 긁어오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

- 아울러, 작년 8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송요구권 대상 분야는 의료·통신 분야로 한정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확대해야 함에도 개정안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실질적으로 제3자정보 전송 분야를 확대하는 것임

-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이행하였거나, 사회적인 요구가 늘었거나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임

○ (OOO 위원) 의료·통신 분야에서 본인정보 전송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정보전송을 해주는 의료기관 등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이해관계자) 정보 전송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없고 그 정보 전송을 위한 비용이 발생됨. 금융 마이데이터 분야에서는 정기적인 전송에 대해서만 비용보전을 받고 있음

○ (OOO 위원)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정보 관리·분석기관에 주는 것과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대리인을 활용해서 정보를 관리·분석 기관에 주는 것과의 차이는?

→ (이해관계자) 개인정보 전문기관이 정보 주체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아서 직접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고 수령할 수 있다면, 이는 본인 전송 요구가 제3자 전송 요구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대리권을 활용해 본인전송 대상 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의료·통신·에너지분야로 한정하고 있는 제3자전송 대상을 모든 분야로 확대시키는 것이 됨

○ (OOO 위원) 정보전송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 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 침해 우려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은지?

→ (이해관계자) 실질적으로 개인이 주문한 이력과 같은 하나의 데이터로는 영업 비밀이 될 수 없음. 다만, 개인의 주문 정보가 모이면 민감 정보가 될 수 있음.

즉,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영업 비밀로서의 가능성이 있음

○ (OOO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정보 전송 대상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정보만 포함되므로,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 (이해관계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서버 설치와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될 수 밖에 없음

○ (OOO 위원) 본인전송 정보 대상을 보면 단편적인 것들만 전송되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하여 많은 부가가치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음.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는 줄어들지 않을지?

→ (이해관계자)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도 선도적인 사업자들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음.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보유한 금융데이터와 본인정보 전송 대상 확대로 인한 일반 산업 분야의 데이터들까지 확보하면 그 부가가치는 상상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반면, 정보 전송자들은 홈페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줄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마이데이터 사업의 목적인 데이터 활성화 취지와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 (OOO 위원) 소비자 단체나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떤지?

→ (이해관계자) 소비자단체는 작년 8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본인전송과 제3자전송의 대상을 일치시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전송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음

**(2) 부처 의견 청취**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본인정보 전송 대상은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제3자정보 전송 대상은 산업별 특성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본인정보 전송 대상을 제3자정보 전송 대상와 달리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임

- 한편, 이해관계자의 영업비밀 유출, 본인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의견을 수용하여, 본인정보 전송 대상을 정보주체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정보로 한정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봄

- 또한 본인정보 전송 대리권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측면이 있으며, 자동화된 도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였음

- 그리고, 법 제35조의3에서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의 관리·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주체가 수신한 개인정보를 위임계약을 통해 관리·분석하도록 하는 것은 개정안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통해 가능한 부분임

○ (OOO 위원) 본인정보 전송 대리인이 정보를 수신할 때 정보주체가 지정한 곳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보주체는 그 수신한 정보를 제3자가 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위탁이 가능한지?

→ (개인정보위) 대리인은 정보주체만이 접근가능한 저장소에 수신한 개인정보를 저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장소가 정보주체만이 접근가능한 장소이면 저장 가능함

- 또한, 정보주체가 수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주는 것은 법령이 개입하는 사항이 아닌 사적 자치영역이므로 위탁 가능함

○ (OOO 위원) 작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정보전송 대상분야를 공공성이 있으며, 위험성이 약한 분야로 한정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대리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3자정보 전송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작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내용과 충돌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은?

→ (개인정보위) 본인정보 전송은 제3자정보 전송과 다르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본인에게만 전송 가능함. 대리인은 정보주체만이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수신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저장소는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공간으로 대리인도 접근할 수 없는 공간임.

○ (OOO 위원) 정보주체가 가입한 사이트가 여러개이고 비밀번호가 모두 다를 경우, 모든 비밀번호를 대리인에게 줘야 함.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 사업자는 대리인이 아닌 정보주체에게 정보를 전송해 주는 중간 앱 사업을 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 (개인정보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API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한데 사업자들에게 API 방식 구현을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일반적인 스크래핑이 아닌 정보전송자와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이후 안전한 스크래핑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

○ (OOO 위원) 제출된 자료로는 제도 확대에 대한 규범적 설명만 있을 뿐 개정안의 필요성,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 보임.

해외사례, 비용분석, 개인정보 전송권 시행 후 성과 분석, 모든 분야 확대시 주의할 점, 마스터 플랜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위) 규범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고 법에서 본인대상 전송 요구권을 폭넓게 규정한 것을 시행령에서 일치시키자는 측면이고, 제3자정보 전송과는 다르게 본인정보 전송에 대한 준비가 업계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음

○ (OOO 위원) 작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권고했던 사항을 벗어난 내용들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고, 여러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있음.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은 되었는지?

→ (개인정보위) 개정안에 대한 여러 우려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계속된 이의제기에 안타까움

○ (OOO 위원) 본인정보 전송대상은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한 정보이고, 그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정보전송자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관련 문제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본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정보주체의 권리임에도 정보전송자에 의해서 전송 범위가 통제되는 이상한 경우가 발생되고, 결국 정보주체는 자기정보 결정권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 (개인정보위) 열람가능한 모든 정보가 정보전송 대상이 되어야겠지만 모든 홈페이지 내용을 표준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 (OOO 위원) 개인정보보위원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 전면시행 보다는 시범 사업을 먼저 시행한 이후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개인정보위)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을 늘려 시행일을 늦추는 방법도 가능함. 다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유예기간에 시범사업을 하고자 함

### (3) 위원회 논의

○ (OOO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차이가 너무 큼.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음

○ (OOO 위원) 영업비밀 문제와 본인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개별 기업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 심의 결과 : 계속 심사

○ 개정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과 의료·통신 분야가 금년부터 시행인 점 등 고려 **추가 논의** 필요

- 또한, 소비자 단체 및 개별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속 심사**' 결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용분석, 해외사례, 마이데이터 운영실적 및 성과 등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보완 자료 검토** 후 **규제심사 재개**